
2030 파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25. 1.

2030 파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1. 공개취지 및 방법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업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환경관리 및 고도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공개하고자 함.
- ▶ 공개방법 : 파주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시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2030 파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나. 계획수립권자 : 파주시

다. 계획승인권자 : 파주시

라.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 기준년도 : 2024년
- ▷ 목표연도 : 2030년

2) 공간적 범위

- ▷ 경기도 파주시 공업지역 전역(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등은 계획수립 공간적 범위에서 제외)

구 분	면 적(m ²)		비 고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선유리	-	143,637	
법원리	117,382	-	
파주리A	149,917	-	
파주리B	121,759	-	
합 계	389,058	143,637	
	532,695		

마. 계획의 내용

- ▷ 공업지역 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자연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 「도시공업지역법」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1) 공업지역 관리유형

가)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 ▷ 공업지역은 산업기반분석 및 지역여건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세분화하며, 각 관리유형 별 목적, 대상 등은 다음에 제시한 바와 같음.

<표 2-1> 공업지역 관리유형 세분화

구분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목적	신산업유지, 산업외 기능 연계를 통한 산업혁신 촉진	기존산업 쇠퇴, 주거/산업 혼재	기존산업 유지, 관리
대상	공장이전적지 등 전략적 거점개발 가능지역	지역여건 불량지역	지역여건 양호지역
구역	산업혁신구역	산업정비구역	-

나) 관리유형별 검토기준

- ▷ 공업지역 관리유형별 검토기준은 다음에 제시한 바와 같음.

<표 2-2> 공업지역 관리유형별 검토기준

구분	유형세분 검토 기준
산업혁신형	■ 선도·신흥산업 포함(단일필지 포함) ■ 특화업종 밀집지역 ■ 대규모공장 이전적지
산업정비형	■ 산업혁신형, 관리형 외 지역 ■ 건축물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 밀집지역
산업관리형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 건축물 노후도 “20년 미만” 밀집지역 ■ 비산업시설(주택, 학교등) 밀집지역

2) 파주 공업지역 관리방안

가) 준공업지역(선유리)

▷ 대상지 현황, 인접 지역과의 연계방안 등을 고려하여 산업정비형으로 설정하도록 계획함.

<표 2-3> 준공업지역(선유리)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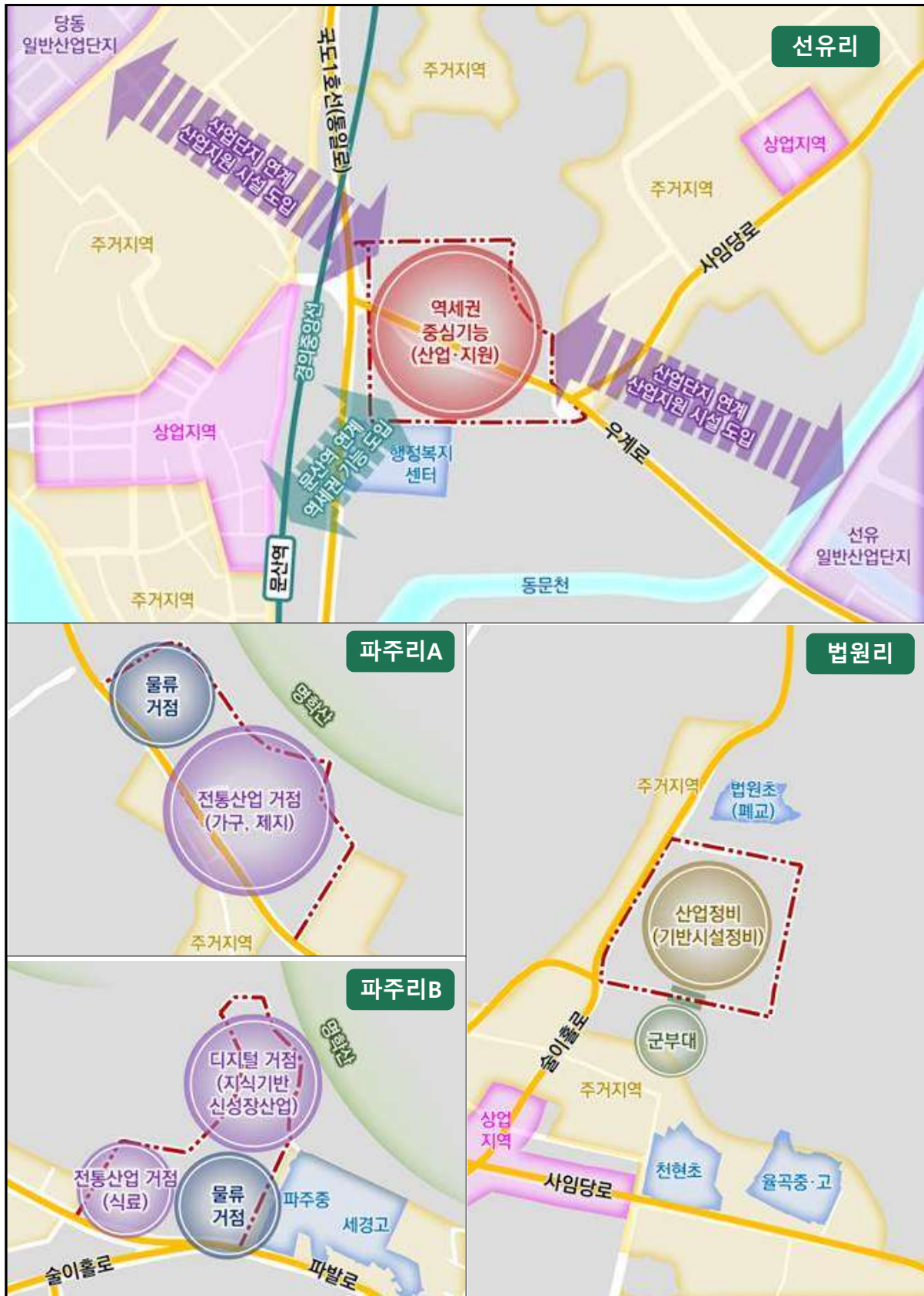
구 분	주요 내용
기본구상	1) 역세권 콤팩트 시티조성을 통한 복합개발 도모 ▷ 선유리 준공업지역 인근 경의중앙선의 문산역 역세권 내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파급효과 극대화 ▷ 북서측 국도 1호선(통일로) 주변 스마트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 공동주택용지 주변으로 첨단산업·R&D 및 주거·상업 등 산업지원시설의 복합화 도모
	2) 공업지역 주변 지역과의 연계방안 제시 ▷ 선유리 준공업지역 동측과 서측에 위치한 주거지역 인근으로 주민편의 및 산업지원을 고려한 상업 기능을 도입하고, 남측 문산을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맘카페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복합문화 기능 도입 ▷ 동측 주거지역(동문굿모닝힐아파트, 양우내안애아파트 등) 인근으로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숲 공원' 도입 및 주변 녹지축과 연계되는 오픈스페이스 확보
관리유형 설정	▷ 선유리 준공업지역 관리유형 분석결과 주거, 근린생활시설 기능의 신축으로 인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용도 혼재로 인해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며, 입지상 경의중앙선의 문산역이 인근에 위치하며, 국도 1호선인 통일로와 같은 대로변에 입지하여 산업입지의 축진이 필요한 지역임에 따라 산업정비형으로 설정

나) 일반공업지역(법원리, 파주리A, 파주리B)

▷ 대상지 현황, 도시기본계획 상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산업정비형으로 설정하도록 계획함.

<표 2-3> 일반공업지역(법원리, 파주리A, 파주리B) 관리방안

구 분	주요 내용
기본구상	1) 열악한 지역여건에 따른 민간의 자발적 정비 유도 ▷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국공유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민간 개발사업 유도를 통해 주차장 및 공원, 녹지 등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 민간 개발사업 유도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시 공공기여분을 통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2) 도시기본계획 상 공업지역 내 시가화용지 관리방안 ▷ 일반공업지역 내 시가화용지(산업)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 및 공업지역 재배치에 따른 별도 사업(도시개발사업 등) 추진 가능
관리유형 설정	▷ 법원리, 파주리A, 파주리B 일반공업지역은 지역여건분석이 불량한 것으로 분석되어, 산업정비형으로 설정



(그림 1.4-5) 공업지역별 공간개편 구상도

3.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가. 정책계획의 대상지역

- ▶ 공업지역 일원 : 532,695m²(일반공업지역 : 389,058m², 준공업지역 : 143,637m²)

<표 3.1-1>

파주시 공업지역

구 분	합 계	선유리 (준공업지역)	법원리 (일반공업지역)	파주A (일반공업지역)	파주리B (일반공업지역)
면 적(m ²)	532,695	143,637	117,382	149,917	121,759

주) 파주시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등은 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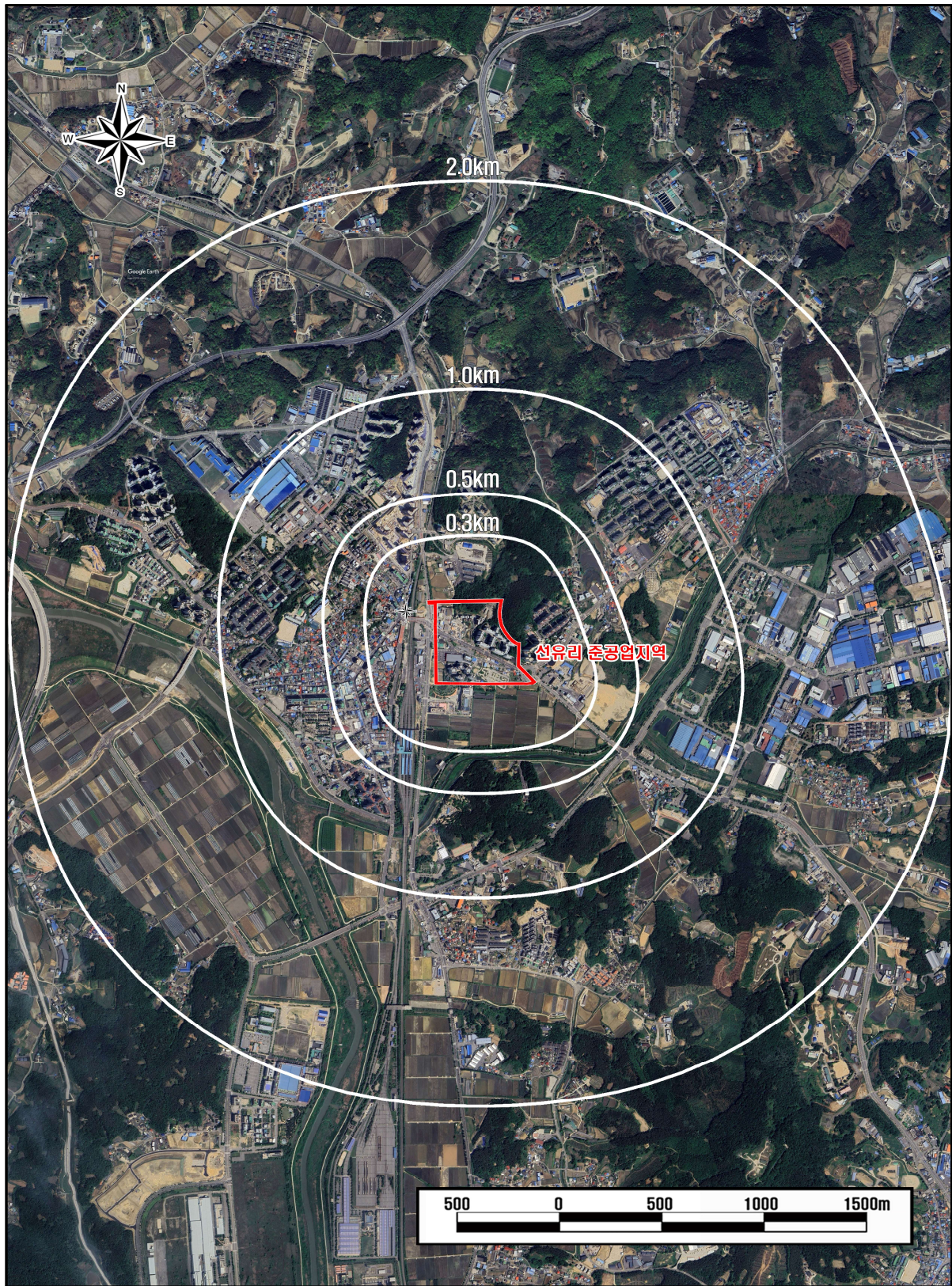
나.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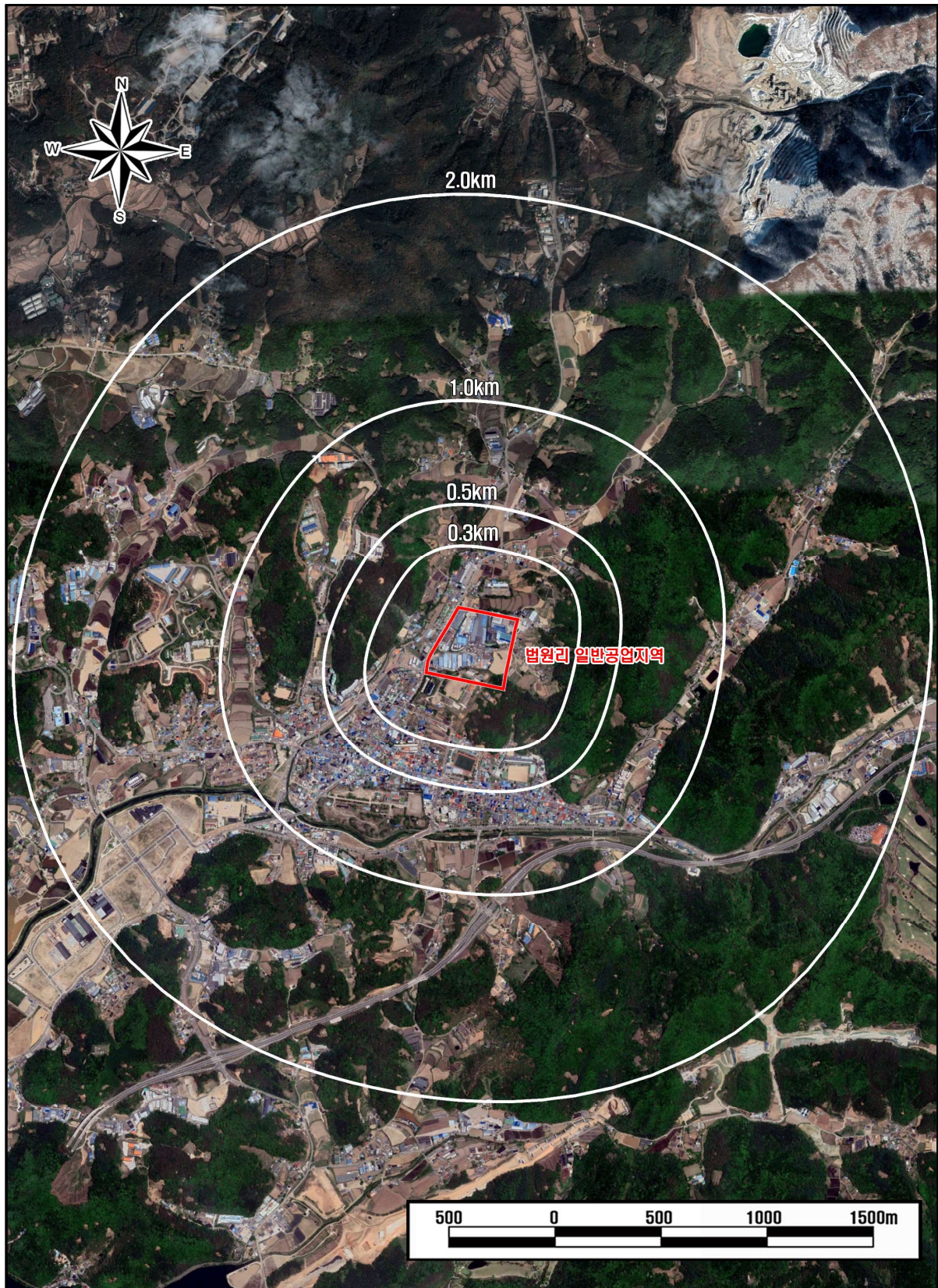
<표 3.2-1>

환경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주요 검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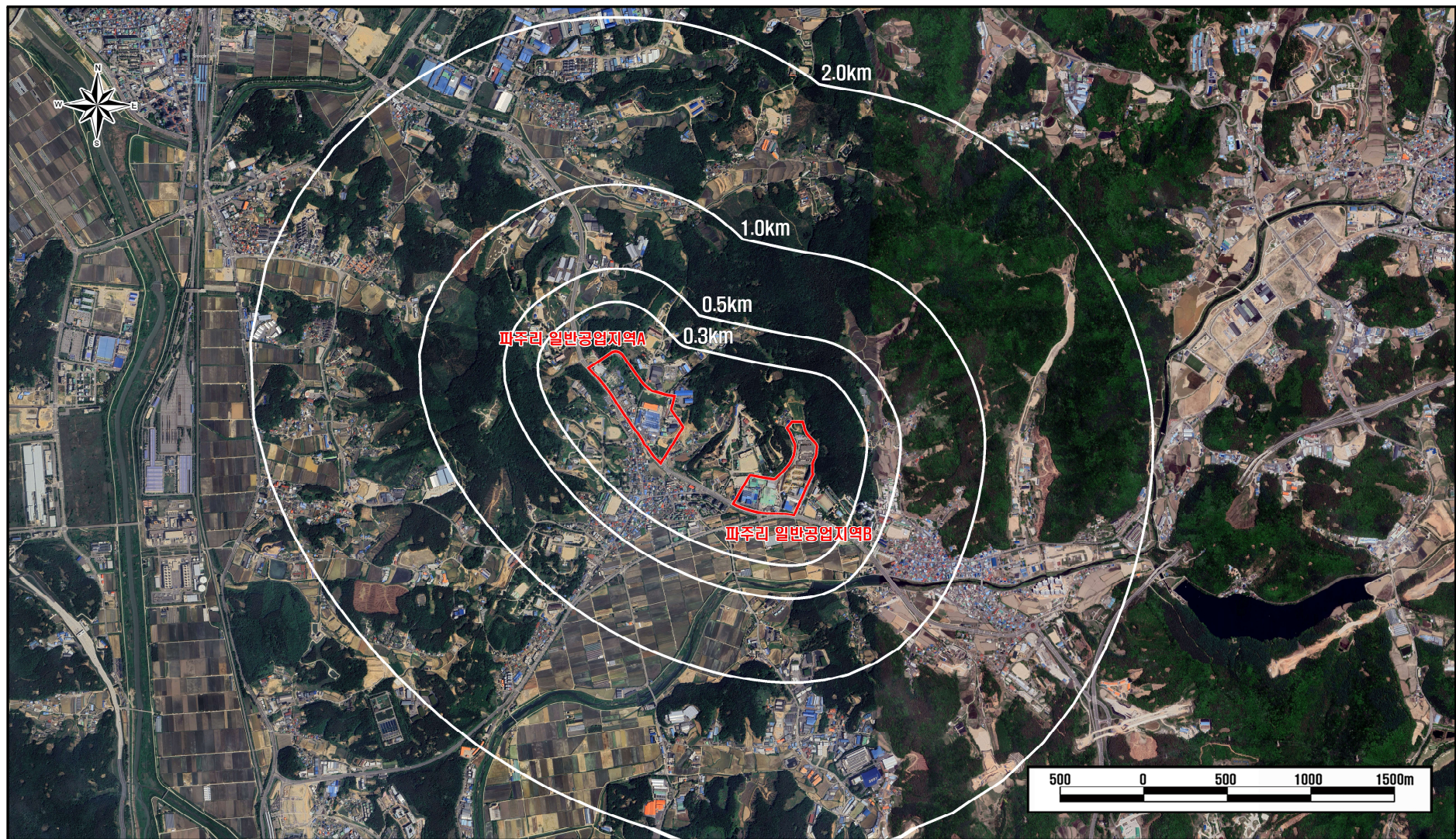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비고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환경정책	파주시 공업지역 일원 532,695m ²	
	나.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2. 계획의 연계성· 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 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나. 수요·공급규모의 적정성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그림 3.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_선유리 준공업지역



(그림 3.2-2) 평가대상지역 설정도_법원리 일반공업지역



(그림 3.2-3) 평가대상지역 설정도_파주리 일반공업지역

다. 대안

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 ▷ 본 계획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임.
- ▷ “대안”은 정책계획 수립의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여야 함.
- ▷ 본 정책계획 수립시 대안의 설정은 본 계획의 성격을 반영하여 「계획비교」, 「수단·방법」, 「시기·순서」 안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음.
- ▷ 본 정책계획 수립시 계획의 특성상 입지 및 토지이용, 수요·공급, 기타의 대안은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표 3.3-1>

대안의 종류 선정 및 방법

대안종류	대안 채택·제외	사유
계획 비교	○	○ 행정계획 수립시와 미수립시에 따른 비교·검토
입지 및 토지이용	X	○ 관내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입지에 대한 대안 없음
수단·방법	○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X	○ 관내 공업지역의 총량은 유지되므로 수요·공급에 대한 대안 없음
시기·순서	○	○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타	X	○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 다른 대안이 없음

2) 대안별 비교·검토

가) 계획비교

- ▷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수립했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설정하여 비교·검토 하였음.
- ▷ 계획비교 대안 별 개요 및 장·단점 검토 결과 계획의 취지 및 대상지역의 체계적 정비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고려하여 계획비교 【2안】(Action)을 선정안으로 제시함.

<표 3.3-2>

계획비교 대안별 비교·검토

구 분	계획비교 【1안】 - No Action	계획비교 【2안】 - Action
개 요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장 점	○현 상태 유지에 따른 공사시 환경적 영향 발생 없음	○대상지역의 사회여건변화와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하여 행정 목적 달성
	○공사비 부담이 없음	○지역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공간관리 활성화
	○계획 달성을 위한 재정 부담 우려 없음	○지역여건개선을 통한 환경정비
		○특화 및 신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단 점	○계획 미수립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수단 부재	○공사시 대기질, 소음·진동 발생 등의 환경적 영향이 예상됨
	○공업지역의 노후 및 공업기능 약화	○관리방안 달성을 위한 재정 부담 우려
	○산업구조변화 및 주거 등 타기능과 혼재된 주변지역 환경악화	
검 토 의 견	○계획권역에 대한 지역의 노후도 및 기반시설 등을 체계있게 조사, 분석하고 사회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선 정 안		◎

나) 수단·방법

- ▷ 공업지역에 대한 공간정비와 관련한 3가지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검토하였음.
- ▷ 금회 계획에서는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지역여건 불량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형인 산업정비형으로 관리유형을 설정하는 것으로 제시함.

<표 3.3-3> 수단·방법(공간정비)에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구 분	대안【1안】	대안【2안】	대안【3안】
개 요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내 용	○신산업유치, 산업외 기능연계를 통한 산업혁신 촉진	○기존산업 쇠퇴, 주거/산업 혼재	○기존산업 유지, 관리
대 상	○공장이전적지 등 전략적거점개발 가능지역	○지역여건 불량지역	○지역여건 양호지역
유 형 세 분 검 토 기 준	○선도·신흥산업 포함 (단일필지 포함) ○특화업종 밀집지역 ○대규모공장 이전적지	○산업혁신형 관리형 외 지역 ○건축물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건축물 노후도 “20년 미만” 밀집지역 ○비산업시설주택 학교 등 밀집지역
선 정 안		◎	

산업관리형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관리

[기본방향]

- 허용 및 권장용도 계획을 통해 가로변 근생 등 편의시설 배치 유도

[공간정비 방안]

- 8m 미만의 협소한 도로의 경우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공지확보를 통한 도로정비, 공개공지 등 휴게공간 조성을 유도
- 유희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원기반시설 조성

[현황 예시]



[정비 예시(안)]



산업정비형 및 산업혁신형 : 구역 지정을 통한 공간 정비

[기본방향]

- 산업 외 용도 혼재지역의 경우 기존산업시설부지의 비율을 유지하고 가로변으로 산업 및 근생(주거 외 용도)기능을 배치

[공간정비 방안]

- 권역별 부족한 지원기반시설(주차장, 공원 등)을 우선 계획
- 권역별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 편의시설 확보

[현황 예시]



[정비 예시(안)]



다) 시기·순서

-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시기에 대하여 대안(단계별 시행, 일괄 시행)을 선정하여 비교·검토함.
- ▷ 본 검토에서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나, 단계별 공정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생태계 간섭 및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시행안을 선정안으로 제시함.

<표 3.3-4>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구 분	대안【1안】	대안【2안】
개 요	단계별 시행	일괄시행
내 용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 계획 이행 시 단계별 이행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시행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 계획 이행 시 일괄 시행
장 점	○수립 대상지역 중 계획 이행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 추진 가능	○시행 기간 단축 가능
	○야생생물의 서식 및 휴식처에 대한 간섭 및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주민 민원을 반영한 단계별 공정계획 수립 가능	
단 점	○시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	○주민 민원에 대한 대처 미흡
		○야생생물의 서식처 간섭 및 교란 발생 가능
선 정 안	◎	

라.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1) 평가항목의 설정

- ▷ 본 정책계획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제7조의2에 따라 정책계획의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전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3.4-1>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분야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국가환경정책	•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특별종합대책 등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시책, 기후위기 적응시책 등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설정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파주시 관리계획 등의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연계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등을 환경계획과 일관성있게 계획 수립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 환경 공간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등의 국토·도시 생태축 • 국토공간계획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간계획
	수요·공급규모의 적정성	• 인구, 자연, 산업, 에너지, 토지이용(보전·완충·개발 용도), 도시·환경 기반시설 등의 수요·공급 발생 요소
	환경용량의 지속성	•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 목표기준 등 환경용량의 지속성 유지

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구 분	내 용
공간적범위	• 파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 면적 : 532,695m² - 선유리(준공업지역) : 143,637m² - 법원리(일반공업지역) : 117,382m² - 파주리A(일반공업지역) : 149,917m² - 파주리B(일반공업지역) : 121,759m²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4년 • 목표연도 : 2030년

<표 3.4-2> 평가방법 선정기준 및 평가범위

평가항목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조사 방법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환경정책	계획수립 적용지역	계획기간에 시행되는 환경정책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등	국가DB, 문헌조사
나. 국제환경동향· 협약·규범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계획기간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등	문헌조사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수립 적용지역	계획 기간에 적용되는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종합계획, 시도종합계획 등	국가DB, 문헌조사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계획수립 적용지역	계획 기간에 적용되는 목표와의 일관성	환경보전목표, 계획의 목표와 추진내용 등	문헌조사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계획수립 적용지역	계획 기간에 적용되는 환경계획	공간관리와 환경 공간계획 조사 등	국가DB, 문헌조사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계획수립 적용지역	계획 기간의 수요·공급 현황	산업, 기반시설 인구, 토지이용 등	국가DB, 문헌조사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계획수립 적용지역	계획 기간에 적용되는 환경계획	국가 환경목표기준, 오염총량관리제(대기·수질 등) 등	국가DB, 문헌조사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가. 협의회 구성

1) 주관 : 파주시

2) 협의회개최일자 : 2024. 12. 2. ~ 2024. 12. 13.

3) 개최장소 : 서면심의

4) 심의위원 : 10인(위원장 포함)

- ▷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2인)
-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1인)
- ▷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7인)

<표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의견 제출	비 고
위원장	파주시	도시계획과장	박○○	○	
위원1	파주시	환경지도과 환경지도팀장	조○○	○	
위원2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박○○	○	
위원3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정책평가실	선임연구위원	문○○	○	
위원4	파주시 도시계획위원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단장	김○○	○	
위원5	파주시 도시계획위원	경인여자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	범○○	○	
위원6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	-	
위원7	문산읍	선유8리장	오○○	○	
위원8	법원읍	법원2리장	유○○	○	
위원9	파주읍	파주6리장	이○○	○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박○○ 위원장(파주시 도시계획과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으로, 파주시 내 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노후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계획으로, 평가준비서 검토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환경 저감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상 지역 설정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대상지를 설정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기 바람
2. 토지이용 구상안
 - 각각의 공업지역에 대하여 관리유형 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토지이용 구상안이 수립되도록 검토 필요
 - 공업지역 주변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3. 대안
 - 적절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에 대한 세부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주민 의견 수렴할 것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에 대하여 검토 할 것

2024. 12. 10.

심의위원



조○○ 위원(파주시 환경지도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파주시 내 도시공업지역의 노후화 및 토지이용 혼재 등의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계획으로 환경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공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구역 중 구역 내 및 인근에 주거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는바, 주거-공업지역의 분리, 완충지역 설치 등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대상 구역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유치 업종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업종 제한 및 공업지역의 축소·확대 등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며, 환경과 조화로운 공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4. 12. 10.

심의위원



▣ 박○○ 위원(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30 파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 총괄 의견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사업시행에 따른 지역 생태연결성, 주민 생활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목표를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 및 제시하여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항목별 영향권의 범위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완충공간 확보

4. 대안

- 대안 비교 시 서로 다른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의 장·단점을 예측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고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2024)」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급회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본 심의의견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024. 12. .

심의위원 인)

문〇〇 위원(KEI)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 총괄 의견

- 본 건은 파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임
- 금회 대상지역인 총 4개소 공업지역에 대하여 유형별(산업혁신형/산업정비형/산업관리형) 후보지 선정 사유와 후보지별 기본계획을 명확히 작성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대상지역별 계획 목표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구상안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대안

-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 마련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No Action과 Action에 대한 비교 외 대상지역별 계획에 대한 추가 대안을 마련하고 비교 후 최적안을 선정
 - 환경개선을 고려한 후보지별 개발계획 대안(토지이용구상(안) 등)을 작성 및 비교 실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간계획의 적정성)
 - 대상지역별 주변 환경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산업시설, 주거시설, 학교, 환경기초시설 등)
 - 주거지역과 혼재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경우 쾌적한 주거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대상지역별 계획기간 내 인구, 산업,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수요·공급을 산정하고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환경용량의 지속성)

- : 유형별(산업혁신형/산업정비형/산업관리형) 선정된 후보지역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 국가환경목표기준,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을 고려하되 파주시의 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발계획 수립
- 후보지역 중 노후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주변 환경여건 및 환경개선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평가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함

2024. 12. 26.

심의위원 { (인)

김○○ 위원(산학협력단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으로, 본 계획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환경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파주시 내 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상지 뿐만이 아닌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설정 필요
2. 토지이용 구상안
 - 각각의 공업지역의 현황여건이 상이하고 발원발생적으로 생성된 공장밀집 지역이므로, 현장조사와 관리유형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구상안이 수립되도록 검토할 것
3. 대안
 - 행정계획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와 시행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안수립은 적정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탄소중립 등 국제동향, 생물다양성 협약 등 계획과 연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검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계획은 개발기본계획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4. 12.

심의위원

[인]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규정 등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어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2024. 12. 16.

심의위원



(인)

이○○ 위원(주민대표(파주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 총괄 의견

- 상위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고, 관련계획 등과 연계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절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절함.

3. 대안

- 계획비교, 수단방법, 시기순서를 제시하였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적절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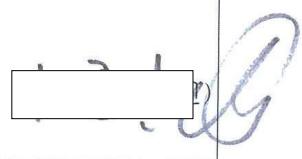
- 기존 기업들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피해가 없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4. 12. 10.

심의위원



■ 유○○ 위원(주민대표(법원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 총괄 의견

- 공업지역내 신규공장 인.허가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절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절함

3. 대안

- 적절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업지역내 주변으로 환경개선이 화소화 필수 있게 계획하여 추진바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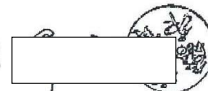
- 현실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하여 추진바람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4. 12. 16

심의위원



1000/1000

I

14/01 2025 10:05AM FAX 0319405405

오○○ 위원(주민대표(문산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 총괄 의견

- 노후된 공업지역 환경개선 및 지역여건을 고려할 것.
- 선유리 대상지는 아파트와 상가시설이 많음. 이에 맞는 계획수립이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정함

3. 대안

- 계획비교 : 2안 / 수단방법 : 2안 / 시기순서 : 1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지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항목에 대해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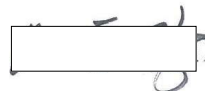
- 공업지역 내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해주길 바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4. 12. 10.

심의위원



5.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안

가. 의견수렴 경위

- ▶ 본 계획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15조의2 규정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나. 의견수렴 계획

-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본 사업의 주관 행정기관인 파주시 홈페이지(14일)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환경부 운영) 상 게시(14일)
- ▶ 정책계획의 의견수렴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협의요청시 :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실시(20일)